

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8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유용원 · 김태규
최형두 · 조배숙 · 최보운
엄태영 · 김대식 · 우재준
이헌승 · 성일종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우리 사회에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나 일반 복지 · 교육 · 고용 지원체계 어디에도 충분히 포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. 이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 제도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면서도 일반적인 교육 및 노동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
현행 제도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, 보건복지부 · 교육부 ·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정보와 정책의 연계가 미흡하여 기초학력 부족, 취업 실패, 빈곤 · 고립 위험, 금융 · 계약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.

이에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

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“경계선지능인”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의 함(안 제2조).
- 다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,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기존 제도와 조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안 제5조).
- 마.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분포·교육·고용·소득·주거·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교육, 취업, 직업훈련, 사회적응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).

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경계선지능인”이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서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이념) 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③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기존 제도와 조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

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장 정책의 수립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직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·평가
2.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 정책의 기본 방향
3.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
4.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5. 경계선지능인의 교육·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
6. 경계선지능인의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

한 사항

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 참여 촉진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분포·교육·고용·소득·주거·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·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경계선지능인 지원

제7조(우선 지원 대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(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)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인 경계선지능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8조(개인별 지원계획) ①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교육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기초학력 보장법」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책 및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사회적응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소통·가사·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업무의 위탁)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
2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